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17709(본소), 2020가단147297(반소) 판결
[청구이의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2019년 제2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90,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1.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반 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2019년 제2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 수행 및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동 D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비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아 2016. 12.경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포항 근린생활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아 2017. 5.경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133,278,61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공사대금 지급방법 합의 및 미이행

1) 원고와 피고는 위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8. 1. 11.에 별지 지급 및 이행약정서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해 주기로 한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H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형사고소, 채권가압류 등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F아파트 G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지 않고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그리고 사실상의 경영자인 I(원고의 지배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을 배임죄로 형사고소(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원고의 사실상의 경영자 I이 배임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932)되었다.

2)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9. 4. 5.에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62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12.에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2019. 4. 9.에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9차134호로 지급명령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8.에 피고와 합의하면서 법무법인 C 작성 2019년 제2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로 다음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I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공정증서의 개략적인 내용

가) 원고는 2018. 8. 3.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151,5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변제기한과 방법) 2019. 5.부터 2019. 11.까지 매월 10일에 10,000,000원씩 7회 각 분할변제하고, 2019. 12. 10.에 81,500,000원을 변제한다.

다) (지연손해금) 원고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

2. -----

3. 분할 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라.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의 일부 변제 및 일부 미이행

원고는 10,000,000원씩 7회 분할 변제하기로 한 70,000,000원은 기한에 맞추어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81,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일부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196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0736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2019. 12. 31.에 20,000,000원, 2020. 6. 19.에 52,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4.에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경상북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189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청구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은 원금 12,870,607원, 이자 313,831원(2020. 6. 19.부터 2020. 9. 15.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34,200원(인지:3,600원, 송달료:30,600원)이었다.

4)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12. 7.에 피고는 위 3)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13,218,6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의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청구(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151,500,000원 중 70,000,000원은 약정에 따라 변제되었고, 2차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2019. 12. 31.에 20,000,000원, 2020. 6. 19.에 5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9,500,000원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189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위 1.마. 3)항] 그 청구채권으로 그 이상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중 7회 분할변제하기로 한 70,000,000원은 약정대로 이행되었으므로 남겨진 채무는 2019. 12. 10.까지 변제하기로 한 81,500,000원이었다. 원고가 이를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9. 12. 11.부터 이행지체가 되면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12. 31.에 20,000,000원, 2020. 6. 19.에 5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189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20. 12. 7. 제3채무자로부터 13,218,640원을 지급받는데, 그 중 최우선 변제충당되는 집행비용 34,200원을 공제하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은 13,184,440원이다. 채무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하므로, 위 각 변제금을 그 변제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충당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아래 충당결과표와 같이 2020. 12. 7. 변제충당으로 원금 290,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충당결과표							
(원 미만은 버림)							
순 번	변제 일자	채무금	변제액	일수	이자 (10%)	이자충당후 잔액	충당후 원금
1		81,500,000					
2	2019.12.31.	81,500,000	20,000,000	21	468,904	19,531,096	61,968,904
3	2020.06.19.	61,968,904	52,000,000	171	2,903,200	49,096,800	12,872,104
4	2020.12.07.	12,872,104	13,184,440	171	603,049	12,581,391	290,713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290,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12. 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충당되었다)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와 같이 인정되는 채무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해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 대금 채무 22,000,000원 중 14,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피고가 그 공사와 관련하여 J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8,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변제(대위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J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 대금 중 J 관련 대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J에 자재대금 채무 8,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그 8,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변제해 주기로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지급 채무는 147,278,610원(= 이 사건 포항 근린생활시설 공사 대금 133,278,610원 +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 대금 14,000,000원)이었음에도 원고의 채무액을 증액하여 15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증액한 이유는 당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J에 직접 변제하기로 한 8,000,000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직접 변제하기로 한 J에 대한 채무금 8,000,000원을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J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원, 피고 사이의 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된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다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전지급 채무는 147,278,610원이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로 15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4,221,390원이 증액되었다. 위 증액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J에 변제하기로 하였던 8,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액상 8,000,000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액분이 J에 대한 채무 관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합의에 있어서 J에 대한 채무 8,000,000원이 반영되어 최종적인 채무액 151,500,000원이 정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도 신청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원고와 합의하면서 피고가 형사고소, 채권가압류 집행, 지급명령 신청을 모두 취하 내지는 해제하였는데 달리 그 소송비용을 회수할 기회나 수단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서 그 소송비용을 반영하여 합의금이 증액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J에 대한 채무 8,000,000원은 합의의 대상물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는 22,000,000원이었고, 그 22,000,000원 중에 피고가 J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합의에서 J에 대한 피고의 채무 8,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이행인수 약정에 해당함)하였으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그 같은 이행인수 약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초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J에 그 자재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 그 때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동안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안동 D고등학교 공사 완공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2.다.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3.라.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것처럼 모두 정당하므로 그 전부를 받아들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별지

지급 및 이행약정서

1. [] 을 '갑' 이라 칭하고, 지급 및 이행인 주식회사 [] 을 '을' 이라 칭한다.
2. '을' 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에 시공 중인 []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가설공사에 대하여 2016. 12. 10. '갑' 이 공사대금 453,000,000원에 하도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3. '갑' 은 2017. 5. 17.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을' 은 위 공사대금 중 133,278,610원과 안동 []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의 공사미불금 14,000,000원 합계 147,278,610원(부가세별도)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을' 은 '갑' 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8.준공 후 1개월 이내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 아파트 [] 호에 대하여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5. 위 [] 호에 대한 분양대금은 15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위 분양대금은 무효로 하고, 위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분양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한 부분 7,721,390원에 대한 것은 상호 합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단, 위 분양대금은 '을' 과 협의하여 분양임의 분양하는 금액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을' 은 '갑' 의 동의 없이 위 [] 호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신탁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7. '을'은 위와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받을 것을 확인하며, '을'은 위 공사대금 미지급시 분양계약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고등학교 기숙사증축공사의 공사비 미불금 22,000,000원중 로 8,000,000원은 '을'이 지급하고 남은 차액금 14,000,000원은 3항에 기재되어있다.
9. '을'이 아파트 2개 이상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을시 '갑'의 미수금으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한다. 분양금은 분양금 금액에 준한다.

2018. 1. 1.

